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**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**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인

2022년 1월 28일

국무총리 김부겸

국무위원
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

● **대통령령 제32376호**

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	2차	3차 이상
가.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변경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65조제2항 제1호	200만원		
나.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65조제2항 제2호	300만원		
다.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·기피·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	법 제65조제2항 제3호	300만원		
라.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지 않거나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법 제65조제1항 제2호	600만원		
마.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65조제2항 제4호	100만원		
바.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교통시설안전진단업무를 휴업·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65조제2항 제5호	100만원		
사.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·기피·방해한 경우	법 제65조제2항 제6호	300만원		
아.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점검·검사를 거부·기피·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	법 제65조제2항 제7호	300만원		

자. 법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(교통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·통계 또는 정보를 말한다. 이하 이 목 및 차목에서 같다)을 보관·관리하지 않은 경우	법 제65조제2항 제8호	100만원		
차. 법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	법 제65조제2항 제9호	100만원		
카. 법 제5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	법 제65조제2항 제9호의2	500만원		
타. 법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	법 제65조제2항 제9호의3	50만원		
파.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	법 제65조제1항 제3호	50만원	100만원	150만원
하. 법 제55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65조제2항 제10호	50만원	100만원	150만원
거. 법 제5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경우	법 제65조제1항 제3호의2	100만원		
너. 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	법 제65조제1항 제4호	50만원	100만원	150만원
더. 법 제5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65조제2항 제10호의2	300만원		
러. 법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65조제2항 제11호	50만원		
머. 법 제5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	법 제65조제2항 제13호	100만원		

대통령령 제31189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9 제2호 개별기준 제17호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별표 9 제2호머목을 버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머. 법 제5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통행방법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65조제2항 제12호	100만원	300만원	500만원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

대통령령 제31189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별표 9 제2호머목 및 버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부와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제한단속원 등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조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교통안전법」이 개정(법률 제18343호, 2021. 7. 27. 공포, 2022. 1. 28. 시행)됨에 따라, 운행제한단속원의 운행기록장치 등 장착 여부 조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